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가단1140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김보순

변론 종결 2024. 9. 27.

판결 선고 2024. 12. 1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23. 3. 3. 체결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3. 3. 접수 제271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4. 26.경 C 주식회사(이하 'C')와 보증원금 1,170,000,000원, 보증기간 2018. 4. 26.부터 2019. 4. 25.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1차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매년 보증기한을 1년씩 연장하여 왔으며(2023. 4. 20. 마지막으로 보증기한을 2024. 4. 19.로 연장하였다), B는 위 신용보증약정상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는 위 신용보증약정일 무렵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023. 3. 3.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3. 6. 30.경 C와 보증원금 280,500,000원, 보증기간 2023. 6. 30.부터 2023. 9. 27.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2차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상 C의 채무도 연대보증하였다. C는 위 신용보증약정일 무렵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추가 대출받았다.

라. 한편, B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로서 D가 발행한 사채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다. 그런데 D가 2023. 7. 10. 만기가 도래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그 무렵 D 및 B에 대하여 '대표자 등 부실사유발생(신용악화인정)'의 신용정보(이하 '이 사건 신용정보')가 등록되었다.

마. C는 2023. 12. 28. 처음으로 위 각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24. 3. 14. 중소기업은행에 위 각 대출 원리금 1,469,564,5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3. 3. 3.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이 사건 신용정보가 등록됨에 따라 2023. 7. 10. 발생한 1,450,500,000원의 사전구상채권이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에 기초한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829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2차 신용보증약정은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 체결일(2023. 3. 3.) 이후인 2023. 6. 30.경 체결되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위 매매예약 약정 체결 당시에는 아직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1차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경우,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2023. 12. 28.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이자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24. 3. 14.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 체결일인 2023. 3. 3.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 당시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 B가 상당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당사자인

C의 매출, 이익 등이 대폭 감소 추세에 있었음을 들어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 체결 이후인 2023.

4. 20. 원고가 1차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1년 연장하고, 2023. 6. 30.경에는 추가로 2차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1차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구상금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최아름

별지